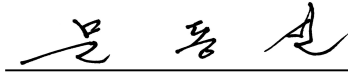


군산시의회 제 1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3 월 2일

군산시 조례 제846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의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를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3조 본문외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과 수석 13인, 총무 1인, 악보, 기획, 악기 각 1인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8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합창단은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각 1인과 반주자 2인, 기획, 총무, 악보 각 1인, 수석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6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으며, 정년은 교향악단 만 57세, 합창단 만 50세(사무직은 만 57세)로 하고 정기평정시 성적이 탁월(평균 90점 이상)한 자는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
4. 천재지변 또는 전지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자
5.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

제8조의 제목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을 “(단원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을 “상임단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단서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시”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립예술단 단원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상의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2. 업무외의 사유로 사전 허가 없이 해외 여행기간을 1개월 초과한 자
3. 상임단원이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참여한 자
4. 예술활동을 방해하거나 예술인으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5. 연(年)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석을 했을 경우
6. 공연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7. 기타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으로 단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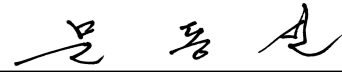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u>	제명 : <u>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3조(구성)(생략)	제3조(구성)(현행과 같음)
1. 교향악단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 및 상임단원을 포함 80명이내의 단 원으로 구성한다.	1.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과 수석 13인, 총무 1인, 악보, 기획, 악기 각 1인 및 상임 단원을 포함하여 8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 1인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60명이내 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합창단은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각 1인과 반주자 2인, 기획, 총무, 악보 각 1인, 수석 및 상임단원을 포함 하여 6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단원의 위촉) ①(생략)	제5조(단원의 위촉) ①(현행과 같음)
②비상임단원은 실력이 우수하고 음악 에 조예가 있는 자로써 공개전형이나 상임단원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삭 제>
③단원의 위촉 연령은 만 35세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연장할 수 있으며, 정년은 교 향악단 만 57세, 합창단 만 50세(사무 직은 만 57세)로 하고 정기평정시 성적 이 탁월(평균 90점 이상)한 자는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6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상임단원으로써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 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	3.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자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
6. 예술인으로써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7. 기타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	
제8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①예술단체의 단원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단원의 구성) ①-----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비상임단원은 전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③<삭 제>
제11조(운영위원회) ①(생략)	제11조(운영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교향악단·합창단지휘자와 예총지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과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한다. 단,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위원의 회의참석을 제척하여야 한다.	③----- ----- -----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시 ----- ----- -----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3조의2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립예술단 단원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상의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2. 업무외의 사유로 사전 허가 없이 해외 여행기간을 1개월 초과한 자 3. 상임단원이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4. 예술활동을 방해하거나 예술인으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5. 연(年)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석을 했을 경우 6. 공연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7. 기타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으로 단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산시의회 제 1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경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3월 2일

군산시 조례 제847호

군산시 경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의 가치있는 도시경관 자원을 조성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며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제공 및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경관”이라 함은 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심미적인 차원의 가치 있는 경관으로써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행정관리의 대상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라 함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영역과 내용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은 위계를 갖는다.
 - 가.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 나.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 다.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 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계획
3. "경관관리"라 함은 민·관이 협력하여 시의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 복원 및 유지,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토목·건축 등의 행위를 계획·설계·감리 및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6. "쌈지공원"이라 함은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잔여 부지 등에 대하여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을 조성해 놓은 공원을 말한다.
7. "도시경관사업"이라 함은 경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업을 말한다.
8. "도시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 나. 도심교량 및 육교
 - 다.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 전신주
 - 라.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 마.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
 - 바. 게시대, 게시판
 - 사. 기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도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체계적인 도시경관의 보전과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훼손행위 중지와 주변경관과 조화 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할 권리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경관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이 조례를 근거하여 실시하는 경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경관계획 등의 수립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시장은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구분) ①시장이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2. 수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3. 중심지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4. 역사문화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5. 교통 산업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6. 야간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7. 기타 시민 요구와 시장이 도시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지구내의 경관계획

②시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①시장이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일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청회의 발표자 및 토론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경관형성 사업의 지원 등

제10조(경관시범마을 등의 선정 및 지원) ①시장은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아름다운 마을·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마을·단지를 경관시범 또는 마을·단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②경관시범 또는 마을 단지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경관형성사업 등의 지원) ①시장은 도시경관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필요한 경우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시경관형성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형성 사업

2.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경관시범 자치구 또는 마을·단지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경관상 시상) ①시장은 도시경관형성에 시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 및 경관조성사업 등을 선정 당해 시설물 및 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소유자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도시경관상의 구분 및 선정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도시미관의 개선

제13조(쌈지공원의 확충) ①「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조성 될 경우 시장은 시민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식재
2. 미술장식품
3. 파고라, 긴의자, 분수대
4. 기타 시장이 썸지공원내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도시구조물 경관향상) ①시장은 가로시설물 등을 포함하는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그 형태 디자인 색채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경관관리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장 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이미지 차별화
2. 생태 환경요소의 반영
3. 도시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경관계획에서 정한 대상의 경관향상 방안

제5장 도시경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도시경관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도시경관계획의 수립과 개성 있는 도시경관형성 등 관련정책의 추진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도시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구성) ①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군산시의회의원, 미술·디자인·조경·

도시경관·조형예술·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도시디자인실무위원회는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10인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⑦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⑧실무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①경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7조 제1 항 분야별 권역별 경관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 제2 항 도시경관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경관상 시상에 관한 심사
5. 기타 시장이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지구, 대로변, 미관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건축물 형태, 마감재 및 색채에 관한 사항
2. 야간경관시설 설치 및 연출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도시디자인실 설치 및 경관전문가 배치) ①시장은 도시경관을 배려한 개성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에 도시디자인실을 두거나 경관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도시디자인실의 업무내용, 운영방안 및 업무지침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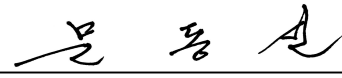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제 1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3월 2일

군산시 조례 제848호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6조”을 “법 제46조”으로, 같은 항 제6호중 “법 제62조”를 “법 제72조”로 한다.

제15조 중 “ 법 제5조의2”를 “법 제6조”로 한다.

제15조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16조제1항 중 “법 제8조의2”를 “법 제12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8조의3”를 “법 제13조”로, 같은 항 제1호중 「주택법」을 법으로, 같은 항 제3호중 “법 제25조”를 “법 제29조”로,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8조”를 “법 제22조”로 ,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9조 중 “ 법 제8조·법 제9조·법 제10조·법 제14조·법 제15조 및 법 제72조”를 각각 “법 제11조·법 제14조·법 제16조·법 제19조·법 제20조 및 법 제83조”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용도변경 완화)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20조”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18조”를 “법 제22조”로 한다.

제21조2 중 “법 제19조”를 “법 제23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23조”를 “법 제27조”로, 같은 항 제1호중 “법 제8조”를 “법 제11조”로, “법 제25조”를 “법 제29조”로, 같은 항 제2호중 “법 제14조”를 “법 제19조”로, 같은 항 제2호중 “건축법 제15조”를 “법 제20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를 “법 제27조”로,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3조”를 “법 제27조”로,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3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제23조 중 “법 제26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32조”를 “법 제42조”로 한다.

제26조 중 “법 제32조”를 “법 제42조”로 ,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35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28조 중 “법 제46조”를 “법 제54조”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49조”를 “법 제57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51조”를 “법 제60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1조”를 “법 제60조”로, 같은 조 제3항중 “법 제51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법 제53조”를 “법 제61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69조의2”를 “법 제80조”로, “법 제69조의2”를 “법 제80조”로, “법 제69조의2”를 “법 제80조”로, 같은 항 제2호중 “법 제14조”를 “법 제19조”로, 같은 항 제3호중 “법 제16조”를 “법 제21조”로, 같은 항 제4호중 “법 제50조의2”를 “법 제59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2조”를 “법 제8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건축심의대상) ① (생략) 1.(생략) 2. 법 제3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5 (생략) 6.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1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1.~4(생략) <신 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①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개선에 필요한 비용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건축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법 제46조----- ----- 3 ~5 (현행과 같음) 6. 법 제72조----- ----- 제1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의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 ----- ----- ----- ----- ----- ----- ----- ----- -----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① 법 제13조 ----- ----- ----- ----- ----- ----- ----- -----

현 행	개 정 안
1.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1. 법 ----- ----- ----
2. (생략)	2.(현행과 같음)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3. 법 제29조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u>군산시 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한다	③ ----- 법 제22조 ---- ----- -----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8조제9조 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자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 ----- ----- ----- -----
<신 설>	제19조의2(용도변경 완화)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 ----- ----- ----- ----- -----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 ----- ----- ----- -----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완화)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완화) 법 제23조----- ----- ----- ----- -----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건축허가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한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2.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생략)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대행) ① 법 제27조----- ----- ----- ----- ----- 1. 법 제11조 ----- 법 제29조----- ----- 2. 법 제19조 ----- ----- -----법 제20조----- ----- 3.(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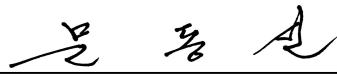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③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구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군산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23조 및 별지 제24호의 3서식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 ----- ----- 「건 축사법」 ----- ----- ----- ----- ----- ----- ----- ----- ----- ④ 법 제27조----- ----- ----- ----- ----- ----- ----- ----- ----- -----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조경면적)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 (이하 “조경의 무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조경면적) ① ----- -----법 제42조----- ----- ----- -----
제26조(대지 안의 식재기준 등)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제26조(대지 안의 식재기준 등) ----- ----- -----법 제42조----- -----국토해양부장관----- -----
제27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 ----- ----- ----- ----- -----
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 ----- -----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 ----- -----
제32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수 없다	제32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 ----- ----- ----- ----- ----- ----- ----- -----

현행	개정안
1~3.(생략)	1~3.(현행과 같음)
②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60조----- ----- ----- ----- ----- ----- -----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법제60조----- ----- ----- ----- ----- -----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① ~③(생략)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① ~③(현행과 같음)
④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61조----- ----- ----- ----- ----- -----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를 부과한다.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 -----법 제80조----- ----- -----법 제80조----- -----법 제80조----- ----- -----
1. (생략)	1.(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9조----- -----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 -----
4. 법 제50조2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 에 위반한 경우	4. 법 제59조----- -----
②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② 법 제83조----- -----

군산시의회 제 1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3월 2일

군산시 조례 제849호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 2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군산경찰서장
3. 군산소방서장
4. 주민생활지원국장
5. 건설교통국장
6.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7.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9.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기획담당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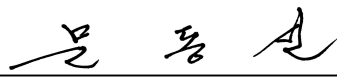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제 1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3월 2일

군산시 조례 제850호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의 제8호를 삭제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주차요금 산정시 10분 단위로 산정하되, 주차시간이 10분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분으로 보며, 총 주차시간이 10분이내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4.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할 수 있다.
1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재래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재래시장 상가번영회가 발급한 재래시장 이용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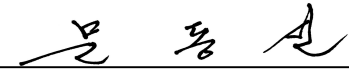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4항 관련(비고)) 1. ~ 7. (생략) 8. 주차시간이 10분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분으로 본다. 9. ~ 12. (생략) 13. 주차시간이 총10분이내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4. <신설> 15. <신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4항 관련(비고)) 1. ~ 7. (현행과 같음) 8. (삭제) 9. ~ 12. (현행과 같음) 13. 주차요금 산정시 10분 단위로 산정하되, 주차시간이 10분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분으로 보며, 총 주차시간이 10분이내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4.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할 수 있다. 1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재래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재래시장 상가변영회가 발급한 재래시장 이용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 제 1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3월 2일

군산시 조례 제851호

군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명 “군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 운영조례”를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경영비 경감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수리지원사업 및 교육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사업장 명칭은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수리 센터”로 하고 위치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란 군산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농기계수리지원사업”(이하 “수리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에서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기계 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농업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 중소형농기계 수리지원 사업을 말한다.
5. “임차인”이란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한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중소형 농업기계의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이론교육, 실습교육, 농기계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 수리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농업기계의 운영·관리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② 센터소장은 본 사업 소요되는 시설, 농업기계, 수리장비 및 차량 등에 대하여 매년 수료를 판단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③ 농업기계임대사업 추진 시 농업기계 임대료에 따른 망실, 파손, 내용 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 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 한다.(별지 서식) 단, 전산 처리 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업무담당 및 관리요원) 본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업무를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농업기계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요원 등 4인 내외로 운영·관리자를 구성한다.

제7조(임대 및 임대료) ① 농업기계를 임대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임대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임대료를 납부하고 임대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임대효력이 발생한다.

- ② 농업기계 임대 시 관리자는 해당농업인 입회 하에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임대농업기계 운전조작 여부 확인 및 안전사용요령 사전교육
 2. 임대농업기계 출고 입고 직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임대기간 등 사용상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③ 임대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관내 농작업료 추이 등을 분석하여 매년 군산시산학협동심의회에 관련 안전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결정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 ④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 한다.
- ⑤ 농업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임대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임대기준 및 사업운영) ① 임대신청은 관내 농업인이어야 하며 임대사업의 형평성 위하여 기종별 1농가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센터소장이 지역특화사업육성,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농업기계임대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종별로 임대사용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임대사용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시점에서 입고시점 까지 1일단위로 계산하나 임대농업기계 수송 등을 고려, 임대농기계 임대차 계약 시 이를 반영하여 정한다.

③ 본사업의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법정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수리 및 수리비) ① 농업기계수리지원사업은 당해연도 매1월말까지 농업기계 수리 및 농업기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센터소장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지원사업의 고장농기계 수리비용은 고장수리 시 농업인이 직접 소요되는 부품을 농업기계교관에게 제공하고 그 외 수리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단, 소모성 부품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예산한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연금 및 부대비용)

① 임대사용 후 농업기계를 계약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반환지연 3일 이내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 × 2배 × 지연일수

2. 반환지연 4일 이상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 × 4배 × 지연일수

②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 유류대 등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임대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액면제 : 재해·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강우 등 작업조건 악화로 농기계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차인이 농업기계 출고일 1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임대료 반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임대계약 취소 또는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 임대/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기계 임대,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4. 임대농업기계 사용 중 농업기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
5. 농업기계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대농업기계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과 사용한 농업기계의 세척 등 장비 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업기계를 출고한 후 농기계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5조(농업기계의 반환)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리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임대차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1년 이내에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대농업기계 반환 약정일을 6일 이상 초과하거나 과거 3회 이상 반환을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7조(운영 심의) 본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본사업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상정하고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사고 대비) 시장은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사용 관리 대장(제5조 4항 관련)

일련 번호	신 청 일 자	임 차 인		임대 농업기계			임 대 료		임작업내역		반 납	
		성 명	주 소	기 종 명	관 리 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 확인	작업 내용	면적 (㎡)	반납 예정일	반납 확인

[별지 제2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 (제5조 4항)

관리번호	기 종 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1)		
구입 금액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원			
구입년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 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 사 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농업기계		관리번호 명판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제7조제1항 관련)

임대인		임차인		
군 산 시 장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대차 농업기계				
농업기계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대료				
농업기계 사용계획				
기계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ha(일 m ²)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대농업기계 반환 지연 시에는 제10조①항에 의거 부과금이 징수됩니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본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임대농업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사업자 : 군 산 시 장 (인)

임차인 :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고지서(제7조 관련)

군 산 시 장

전북군산시 시청로 8번지

5 7 3 - 7 0 3

세외수입
고지서
재 중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채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채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사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납인과취급자인이없으면영수증은무효입니다
※공무원은원금을조달납부하지않습니다군 산 시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납 부 기 한	과 목	까지	까지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부 과 내 역

위의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채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시중은행, 농협, 전국우체국

군 산 시 장

수납인

군산시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세외
수입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수납인

군 산 시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 번호	검

(시청보관용)

세외수입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납 부 기 한	과 목	까지	까지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부과부서:
수납부서: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귀하

수납인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제11조 관련)

기종명	형 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면제사유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수리지원사업 조례 제11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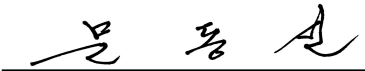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군 산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 관련 증명서 1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3월 2일

군산시 규칙 제422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의 범위내에서”를 “별표 1에 의거”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직책수당은 별표2의 직책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본문으로 한
다.

제6조를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출산,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는 단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휘자의
자체평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13시부터 17시”를 “10시부터 16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단장은 공연,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근무시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⑤지각·조퇴·외출 또는 무단이석 횟수를 합하여 3회가 되면 결근 1일로 하며,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8조 본문 중 “별표 5와 같다”를 “별표 5 및 별표 7과 같고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휴가의 종류)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

제10조를 제15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병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공연을 할 수 없을 때
2.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10조(공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업무에 관하여 법원·검찰 또는 기타기관 등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제11조(특별휴가) ①임신 중인 여자단원은 출산 전후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단원은 만6세이하 취학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3명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술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담당과장 1인과 예술단 상임지휘자 2인으로 하고 간사는 예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의 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징계는 해촉·출연정지·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출연정지기간은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징계처분에 따라 해촉된 자는 3년 이내에 단원이 될 수 없다.

별표 1과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별표3, 별표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 ①상임지휘자의 보수는 “별표1”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매년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익년도 보수를 결정한다. ②(생략) ③(생략) 1.직책수당은 별표2의 직책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생략)	제4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 ①상임지휘자의 보수는 별표 1에 의거 지급하되-----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현행과 같음)
제5조(실비보상) ①비상임단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생략) ③각종 공연시 “별표6”의 지급기준에 따라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비보상) ①<삭 제> ②(현행과 같음) ③<삭 제>
제6조(정기 실기평정) ①(생략) ②(생략) <신 설>	제6조(정기 실기평정)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출산,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는 단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휘자의 자체평정으로 같음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7조(복무) ①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17시로 한다.	제7조(복무) ①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6시로 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신 설>	④단장은 공연,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근무시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⑤지각·조퇴·외출 또는 무단이석 횟수를 합하여 3회가 되면 결근 1일로 하며,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8조(휴가 및 연가) 상임단원의 경조사별 휴가 및 연가 일수표는 별표 5와 같다.	제8조(휴가 및 연가) 상임단원의 경조사별 휴가 및 연가 일수표는 별표 5 및 별표 7과 같고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 설>	제8조의2(휴가의 종류)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
<신 설>	제9조(병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공연을 할 수 없을 때
	2.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공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업무에 관하여 법원·검찰 또는 기타기관 등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신설>	제11조(특별휴가) ①임신 중인 여자단원은 출산 전후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단원은 만6세이하 취학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3명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술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담당과장 1인과 예술단 상임지휘자 2인으로 하고 간사는 예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의 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징계는 해촉·출연정지·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출연정지 기간은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징계처분에 따라 해촉된 자는 3년 이내에 단원이 될 수 없다.
제9조(단원증) (생략)	제14조(단원증) (현행과 같음)
제10조(퇴직금) (생략)	제15조(퇴직금) (현행과 같음)

[별표 1]

상임단원의 보수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보수기준(현행)	보수기준(개정)
교향악단 지휘자	연35,000천원 ~ 연48,000천원 이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합창단 지휘자	연33,000천원 ~ 연48,000천원 이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단무장 악장 반주자	행정7급 봉급월액 기준	행정7급 봉급월액 기준
상임단원	행정8급 봉급월액 기준	행정8급 봉급월액 기준

[별표 2] - 삭제

상임단원의 직책수당 지급기준(월액)

소 속	직책명	지급기준
교향악단	악 장 단 무 장 상임단원	250,000원<개정2005.10.17> 250,000원<개정2005.10.17> 8급직급보조비기준
합창단	단 무 장 반 주 자 상임단원	250,000원<개정2005.10.17> 250,000원<개정2005.10.17> 8급직급보조비기준

[별표 3] 비상임단원의 보상금 지급표 - 삭제

직 책	비 상 임 원
월수당액	300,000

[별표 6] 시립예술단 공연보상금 지급기준 - 삭제

소 속	지 급 기 준
교향악단 합 창 단	50,000

[별표 7]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제8조 관련)

재직기간	연가일수	비 고
1년 미만	7일	
1년이상 3년 미만	10일	
3년이상 5년미만	13일	
5년이상 7년미만	15일	
7년이상	18일	

군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3월 2일

군산시 규칙 제423호

군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폐지규칙안

군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09-15호

고 시

군산 도시관리계획【주차장】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일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변경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35	주차장	중앙로1가 17-1번지, 개북동 1-3번지	2,121.3	감)2,121. 3	-	군산고154 (04.3.12)	

2.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도서 : 실음생략

3. 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지형도면 : 실음생략. 끝.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09-16호

성산면 둔덕리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지적도근점(10점)설치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를 지적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4일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중형선수치		토지소재	설치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 칭	번 호	X(m)	Y(m)			
지적도근점	51009	276842.42	178543.88	성산.둔덕656-1	2007.3.14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51010	276965.36	178690.05	성산.둔덕78-1	“	“
“	51011	276945.23	178717.25	성산.둔덕31-3	“	“
“	51012	276962.13	178774.12	성산.둔덕28-2	“	“
“	51013	276989.39	178817.35	성산.둔덕463-3	“	“
“	51014	276012.94	178876.23	성산.둔덕496-1	“	“
“	51015	277099.75	178934.36	성산.둔덕504	“	“
“	51016	277321.75	179005.18	군산.내흥27-11	“	“
“	51017	277443.93	178786.32	군산.내흥107-2	“	“
“	51018	277498.76	178575.11	군산.내흥139-1	“	“

군산시 고시 제2009-18호

군산시 택시운임·요금 변경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신고 등)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군산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의거 군산시 택시요금 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7일
군 산 시 장

1. 시 행 일 : 2009년 3월 12일(목) 00:00부터

※ 요금미터 수리검정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조정된 요금적용
(변경요금 조건표에 의해 인상된 요금 적용 불허)

2. 사업구역 : 군산시 전지역

3. 택시운임·요금 변경내역[중형택시]

구 분		현행 요금		조 정		비 고
종 류		적용방법	금액(요금)	적용방법	금액(요금)	
기본운임		2km까지	1,800원	2km까지	2,200원	
이후운임		178m당	100원	150m 당	100원	
거리시간 병산운임		15km/h이하시 43초당	100원	15km/h이하시 36초당	100원	
인 상 율		기본운임		기본운임 22.2%		
할증(하감)운임	시계외	사업구역 외 운행	20%	사업구역 외 운행	20%	현행과 동일
	심 야	00:00-04:00		00:00-04:00		
	복합할증	5.026km 초과	40%	5.026km 초과	40%	
	호출시	호출1회당	1,000원	호출1회당	1,000원	현행과 동일

4. 적용기준

- 거리요금 : 기본거리 2km초과 후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 적용
- 시간요금 : 15km/h이하로 주행시 소요시간에 따라 요금 적용
- 심야할증 : 00:00~04:00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할증 적용
- 시계 외 운행할증 : 사업구역(군산시) 밖으로 운행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할증 적용
- 요금미터 수리검정 : 택시운임·요금변경 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요금 미터 수리 검정 완료

택시 요금 인상 조건표

주 간(04:00 ~ 24:00)					심야 할증(00:00 ~ 04:00)				
(현 행) 기본요금 (2km 미만) 1,800원 주행요금 178m당 100원					(현 행) 기본요금 (2km 미만) 2,160원 주행요금 178m당 120원				
(조 정) 기본요금 (2km 미만) 2,200원 주행요금 150m당 : 100원					(조 정) 기본요금 (2km 미만) 2,640원 주행요금 : 150m당 120원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거 리 (단위 : M미만)	요 금 (원)	거 리 (단위 : M미만)	요 금 (원)		거 리 (단위 : M미만)	요 금 (원)	거 리 (단위 : M미만)	요 금 (원)	
2,000	1,800	2,000	2,200		2,000	2,160	2,000	2,640	
2,178	1,900	2,150	2,300		2,178	2,280	2,150	2,760	
2,356	2,000	2,300	2,400		2,356	2,400	2,300	2,880	
2,534	2,100	2,450	2,500		2,534	2,500	2,450	3,000	
2,712	2,200	2,600	2,600		2,712	2,640	2,600	3,120	
2,890	2,300	2,750	2,700		2,890	2,760	2,750	3,240	
3,068	2,400	2,900	2,800		3,068	2,880	2,900	3,360	
3,246	2,500	3,050	2,900		3,246	3,000	3,050	3,480	
3,424	2,600	3,200	3,000		3,424	3,120	3,200	3,600	
3,602	2,700	3,350	3,100		3,602	3,240	3,350	3,720	
3,780	2,800	3,500	3,200		3,780	3,360	3,500	3,840	
3,958	2,900	3,650	3,300		3,958	3,480	3,650	3,960	
4,136	3,000	3,800	3,400		4,136	3,600	3,800	4,080	
4,314	3,100	3,950	3,500		4,314	3,720	3,950	4,200	
4,492	3,200	4,100	3,600		4,492	3,840	4,100	4,320	
4,670	3,300	4,250	3,700		4,670	3,960	4,250	4,440	
4,848	3,400	4,400	3,800		4,848	4,080	4,400	4,560	
5,026	3,540	4,550	3,900		5,026	4,240	4,550	4,680	
5,204	3,680	4,700	4,000		5,204	4,410	4,700	4,800	
5,382	3,820	4,850	4,100		5,382	4,580	4,850	4,920	
5,560	3,960	5,000	4,200		5,560	4,750	5,000	5,040	
5,738	4,100	5,150	4,340	복합할증 적 용	5,738	4,920	5,150	5,200	복합할증 적 용
5,916	4,240	5,300	4,480	“	5,916	5,080	5,300	5,370	“
6,094	4,380	5,450	4,620	“	6,094	5,250	5,450	5,540	“
6,272	4,520	5,600	4,760	“	6,272	5,420	5,600	5,710	“
6,450	4,660	5,750	4,900	“	6,450	5,590	5,750	5,880	“
6,628	4,800	5,900	5,040	“	6,628	5,760	5,900	6,040	“
6,806	4,940	6,050	5,180	“	6,806	5,920	6,050	6,210	“
6,984	5,080	6,300	5,320	“	6,984	6,090	6,300	6,3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산시 고시 제2009-20호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고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1. 개요

- 계획명 :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계획기간 : 2007년 ~ 2011년 (5년단위 계획)
-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 군산시 시가화지역
 - 2차적 범위(간접영향권) : 군산시 주변 인접지역

2. 계획내용

-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 전망
- 이동편의시설 실태분석 및 진단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수립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세부 추진방안
- 투자소용비용 산출 및 재원조달 방안
- 연차별 시행계획

3.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자료는 군산시청 교통행정과(☎063-450-436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

군산시 공고 제2009-385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6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군 산 시 장

1. 공인신조 및 폐기사유 : 공인마멸로 인한 재등록
2. 공인등록 연월일 : 2009. 2.18
3. 폐기공인 연월일 : 2009. 2.18
4. 등록공인 최초 사용일 : 2008. 2.
5. 등록공인 및 인영(1건)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대야면	군산시대야면장인 민원사무전용(인증기)	

6. 폐기공인 및 인영(1건)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대야면	군산시대야면장인 민원사무전용(인증기)	

군산시 공고 제2009-404호

행정대집행에 따른 불법 광고물 반환 및 귀속처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광고물의 금지 또는 제한등)에 의거 대집행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40조의2(제거된 광고물의 보관 및 처리), 40조의3(광고물등의 반환), 40조의4(미반환광고물등의 귀속)에 의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리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20일

군 산 시 장

☐ 주요 공고 내용

1. 행정대집행 내용

가. 물 건 : 총 59개 (입간판 29, 에어리이트 12, 현수막 16, 베너기 2)

나. 기 간 : 2009. 2. 19

2. 보 관 장 소 : 수송동 건설과 자재관리소

3. 공 고 기 간 : 2009. 2. 20 - 3. 6

4. 공 고 방 법 : 시 및 읍면동 행정게시판 · 홈페이지, 시보, 시정소식지

5. 반 환 방 법 : 불법광고물 광고주가 해당 과태료를 시에 납부후 아래서식에 의거 반환 신청

6. 반 환 신 청 : 군산시 건설과 광고물 담당부서(450- 4480)

7. 과태료 기준(앞, 뒤, 옆면 포함한 면적)- 입간판, 에어리이트, 베너기

가. 면적: 1.7 - 2.0㎡ → 39만원.

나. 면적: 3㎡ 이상은 80만원에 0.5㎡초과면적마다 10만원씩 가산

다. 전기를 사용한 간판은 기본 과태료에 1.5 - 2.0배 추가 부과

8. 미반환 광고물 처리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미 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규정에 의하여 공고 만료일로부터 1월이 경과 하여서는 그 광고물에 대한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군산시에 귀속한다. 이에 군산시에서는 제40조의2(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폐기처분한다.

영화동거리 불법광고물 수거품목

일련 번호	광 고 물 류	표 내 시 용	수 량	보 관 년월일	보 장 관 소	위 반 장 소	담 취 당 자	비 고
합계	총 계 59 -입 간 관:29개 -에어라이트:12개 -현 수 막:16개 -배 너 기: 2개		59	2009	수송동과 건설재 자관리소	군산시	조상훈	
1	입간관	인동낙시활인마트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2	"	성인담배용품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3	"	황제뮤직홀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4	"	경수식당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5	"	충청도 활어횃집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6	"	사또네 활어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7	"	무한정김밥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8	"	리치노래주점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9	"	모모네(막걸리)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10	"	하나로약국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11	"	돌고래야식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12	"	남강손칼국수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13	"	진영식당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14	"	불타는구공탄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15	"	놀부네집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16	"	새별크리닝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17	"	법흥공사(해외이민)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18	"	조던크리닝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19	"	세기보청기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20	"	풍미생고기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21	"	투맨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22	"	옛고을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23	"	다원각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24	"	만화천국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25	"	동원염업사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26	"	월명곱창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27	"	구암식당	1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28	입간판	수정화원	1	상	동	상	동	상	동	
29	"	형제반점	1	상	동	상	동	상	동	
30	에어라이트	옥소리노래주점	1	상	동	상	동	상	동	
31	"	구이나라	1	상	동	상	동	상	동	
32	"	천명집	1	상	동	상	동	상	동	
33	"	꼬꼬댁	1	상	동	상	동	상	동	
34	"	황제뮤직홀	1	상	동	상	동	상	동	
35	"	홍부네집	1	상	동	상	동	상	동	
36	"	필가요주점	1	상	동	상	동	상	동	
37	"	노다지뮤직홀	1	상	동	상	동	상	동	
38	"	리치노래주점	1	상	동	상	동	상	동	
39	"	에니타임편의점	1	상	동	상	동	상	동	
40	"	주사랑클럽	1	상	동	상	동	상	동	
41	"	신사가요주점	1	상	동	상	동	상	동	
42	현수막	아싸가요주점	1	상	동	상	동	상	동	
43	"	어사랑	1	상	동	상	동	상	동	
44	"	리치정보통신	1	상	동	상	동	상	동	
45	"	항도장목욕탕	1	상	동	상	동	상	동	
46	"	황제뮤직홀	1	상	동	상	동	상	동	
47	"	홍부네집	1	상	동	상	동	상	동	
48	"	웃마을	1	상	동	상	동	상	동	
49	"	밀물	1	상	동	상	동	상	동	
50	"	필가요주점	1	상	동	상	동	상	동	
51	"	물노래주점	1	상	동	상	동	상	동	
52	"	노다지뮤직홀	1	상	동	상	동	상	동	
53	"	웨이리마트	1	상	동	상	동	상	동	
54	"	밀레의류수선	1	상	동	상	동	상	동	
55	"	트렉스파	1	상	동	상	동	상	동	
56	"	장터왕족발	1	상	동	상	동	상	동	
57	"	진주집	1	상	동	상	동	상	동	
58	베너기	해오름	1	상	동	상	동	상	동	
59	"	웨이리마트	1	상	동	상	동	상	동	
		이	하			여	백			

(별지 제9호서식) <전부개정 2005.12.30>

광고물등 청구 및 인수증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량	
⑥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량	
⑥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군산시 공고 제2009-412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군산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와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2.

군 산 시 장

(단위 : 명)

내 국 인			20세이상 영주체류자격 외국인 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내국인 외국인)	투표청구 서명인 수
19세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 주민수(B)	선거권이 있는 주민수(A-B)			
203,314	1,055	202,259	80	202,339	18,390 (청구권자 총수의 1/11)

군산시 공고 제2009-423호

공 고

군산시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 (20세→ 19세)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시 관련조례인 군산시주민투표조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 : 조례(안) 제2조제4항

나.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 조례(안) 제3조

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주소, 거소, 체류지

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전부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8, 팩스450-4345)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지정담당 (전화450-42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주민투표조례”를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 중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자·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교 부 신 청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 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사·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시의 책무) ①~③ (생 략) ④ (신 설)	제2조(시의 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 ----- -----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u>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u>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u>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u>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투표청구서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u>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u>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u>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 략) ②시장은 <u>주민등록번호</u> 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를 ----- ----- ----- ③~④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09-426호

공 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가 시행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일 토표를 마친 선거인이 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이용료 면제를 통하여 투표 참여율을 촉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를 정착코자 우리시 관련조례인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의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명개정 : 제명에 군산시 추가

- 현 재 :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 개 정 :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나. 입장료 면제 조항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할 경우를 추가로 신설 :
조례(안) 제3조

-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843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11-1

군산시청 철새생태관리과(전화453-7213, 팩스453-732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철새생태관리과 관리담당(전화453-72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를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금강철새 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제8조(입장료 면제) ① ~ ⑤ 생략 ⑥ <신 설>	제명 : <u>군산시</u> 금강철새 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제8조(입장료 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시장</u>은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 회에서 발급한 투표 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 우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군산시 공고 제2009-458호

공 고

군산시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과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일부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사항을 정비하여 관계법령을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폐지법령을 제정 법령으로 수정

나.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법률 제6252호 2000. 1. 28.)됨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군산시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군산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전화450-6379, 팩스451-428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경영지원담당(전화450-6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개발법 (이하 법 이라 한다)”을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을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6항”을 “영 제1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10조”를 “영 제13조”로, “영 제10조제1항”을 “영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산시 장(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11조제1항1호”를 “법 제11조제4항”으로, “영 제19조제2항”을 “영 제22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시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23조제3항”을 “영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영 제52조제2항”을 “영 제62조제2항”으로,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도시계획조례”를“「도시계획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59조제1항”을 “법 제60조제1항”으로 , “군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이하 도시개발 특별회계라 한다)”을 “군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이하“도시개발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법 제61조”를 “법 제62조”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법 제68조제3항”을 “법 제70조제3항”으로,
 같은항 제5호 중 “법 제83조”를 “법 제85조”으로,
 같은항 제6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단체에”를 “군산시에”로,
 같은항 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같은 항제8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각 항 외의 본문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전의 제13조 본문)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1조제3항”으로, 같은 조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제3호(중전의 제1항제3호)의 후단 괄호 안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같은 항제6호(중전의 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제1호(중전의 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나목(중전의 제2항제1호나목)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제2호(중전의 제2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

제13조제4항(중전의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제1호(중전의 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도시계획법제3조제10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같은 항제2호나목(중전의 제3항제2호나목)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와”를 “시장과”로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지방재정법 제65조”을 “「지방재정법」 제7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공영사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폐지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u>도시개발법</u>(이하 <u>법</u>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u>령</u> 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① (생략) 1. <u>도시개발구역</u> 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u>도시개발사업</u>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u>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법 제7조제1항과 <u>령 제10조제6항</u>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제1조(목 적) ----- <u>「도시개발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 ----- (이하 <u>“령”</u>이라 한다) ----- ----- 제2조(정 의) ① (현행과 같음) 1. <u>“도시개발구역”</u> ----- ----- ----- 2. <u>“도시개발사업”</u> ----- ----- ----- ②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 -----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법 제7조제1항과 <u>령 제13조</u>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법 제 20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고외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영 제13조 영 제13조제2항 ----- ② 군산시장(이하“시장”으로 한다) -----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 11조 제1항1호의 규정과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 11조 제4항 -----영 제22조의 ----- ----- 시장 -----
제9조(조합정관 작성)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작성은 전라북도 도시개발사업조합정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정관 작성)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작성은 전라북도 도시개발사업조합정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국토의 계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 2호라목 (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수 있다.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 2호라목 (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 5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이하 도시개발 특별회계라 한다)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60조제1항- ----- ----(이하“도시개발 특별회계”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①(생략) 1.~2.(생략)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의 금액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62조의 ----- -----. 4. 법 제70조제3항의 ----- 5. 법 제85조의 ----- -----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군산시에----- ----- 7. 「지방세법」 제238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 관리한다. ①(생략) 1.~2.(생략) 3. 도시 기반시설 중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용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다)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4.~5.(생략) 6.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사업비 ②(생략)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생략)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제10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 2. (생략)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 법 제61조제3항 ----- ----- ①(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현행과 같음) 6. 시장이----- ----- ②(현행과 같음) 1. 시장 ----- ----- 가.(현행과 같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③(생략) 1. <u>지방자치단체장</u>이 시행하는 <u>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u>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2. (생략) 가. (생략) 나.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u> 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공사비 제14조(용자조건) ①~②(생략) ③용자는 <u>지방자치단체와</u> 용자 대상기관 이하 “용자기관”이라 한다)가 장이 체결한 용자약정에 의한다. ④용자기관은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u>지방자치단체장</u>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u>지방자치단체장</u>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u>지방재정법 제65조</u>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u>지방자치단체</u>에 도시개발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가. 도시개발 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③ (현행과 같음) 1. <u>시장</u>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2.(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4조(용자조건) ①~②(현행과 같음) ③ ----- <u>시장과</u> ----- ----- ----- ④ ----- ----- ----- ----- <u>시장</u> ----- ----- ⑤<u>시장</u> ----- 「지방재정법」 제78조----- ----- ----- -----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u>군산시</u> ----- ----- -----

현행	개정안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 시의회 의원 2인, 3인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 2인 이내의 회계전문가로 한다.	②----- ----- ③ ----- -----공영사업과 장----- -----

군산시 공고 제2009-459호

공 고

군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2001. 6. 15일자로 ‘군산시도시개발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가지 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들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여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짐

2.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공영개발사업소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폐지(조례 340호 1998. 10. 1.)됨에 따라 군산시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전화450-6379, 팩스451-428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경영지원담당(전화450-6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이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은 군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 자산으로 이관한다.